

## < 부 록 >

### 부록 1 : 신설 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sup>37)</sup>

#### 1. 외국생명보험회사업자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 가. 허가 신청자격

- ① 원칙적으로 본국 안에서 전국적인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② 최근 3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 및 자산규모가 기존 국내생명보험회사의 당해 년도별 평균 수입보험료 및 평균자산규모의 2분의 1이상인 자
- ③ 최근 3사업년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고, 본국의 정부 또는 보험감독기관에서 당해기간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고 판정 받은 자
- ④ 최근 5년동안 생명보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⑤ 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출자 및 출연을 받은 자로부터 자본금의 출자 또는 기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자

##### 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사항

- ① 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허가 당시의 국내보험시장 상황등을 감안하여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함
  - 허가신청자격 유무
  - 허가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타당성
  - 허가신청자가 계획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국내 보험시장의 안정

---

37) 생명보험회사료(1992)에서 재인용, 재무부 보존 자료 및 보도자료.

유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 보험산업과의 유대관계 및 향후 대한민국 보험산업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 다. 영업기금

- ① 대한민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생명보험회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기금은 20억원 이상임
- ② 영업기금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국통화를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원화자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본국통화로 예탁하여야 함
- ③ 본국통화로 예탁한 영업기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탁자금의 인출 또는 예탁금융기관의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2.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 허가기준

### 가. 주주의 자격

- ① 내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함
  - 최근 1년간 금융기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5위 이내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재무부장관이 사회통념상 당해 계열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및 그 계열주가 아닌 자. 다만, 위 기준에 의한 16위에서 30위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인 경우에는 당해 합작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액의 50/100 미만을 소유할 수 있음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와 그 계열법인이 아닌 자. 다만,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최근 3년동안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부실기업정리대상법인(산업합리화대상) 및 그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 위의 계열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②외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함

- 본국 안에서 생명보험회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생명보험회사업을 영위하여오고 있는 자. 다만,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합작법인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가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외국주주의 자격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함
- 최근 3사업년도의 당해법인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규모가 기존 국내 6개 생명보험회사의 당해연도별 평균 수입보험료 및 평균 자산규모의 1/2 이상인 자
- 외국보험회사업자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 동안 주주배당을 실시하였어야하고 외국보험회사업자가 상호회사일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 동안 계약자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하며, 양자 모두 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미국보험회사업자의 경우 최근 3사업년도 동안의 영업실적도 보험감독관협회가 정하는 지표에 의거 고려될 것임)
- 최근 5년 동안 보험회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벌금 및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았거나  
임원이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해임된 사실이 없는  
자

- 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출자 및 출연을 받은 자로부터 자본금  
의 출자 또는 기금을 납입 받지 아니한 자.

## 나. 자본금과 예탁금

### ①납입자본금

-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생명보험회사 : 6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 지방에 본사를 두는 생명보험회사 : 5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  
입

### ②자본금의 일부 예탁

- 납입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예탁해야 함

## 다. 외국인 지분비율

### ①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한도

-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9%이상이어야  
함
- 본점소재지가 지방일 경우 제한이 없음
- 다만, 16위에서 30위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과 합작하는 경우에  
는 본점소재지의 위치에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  
하여야 함

## 라. 허가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 ① 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국내보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호혜주의원칙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함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이 기준에 의한 “주주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보험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3. 전국규모 순수내국생명보험회사 신설 허가기준

### 가. 주주의 자격

- ① 개인(자연인)이 출자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함
-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여신관리대상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5위이내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계열주
  - 최근 3년동안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위의 계열주 또는 기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②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은행업, 증권업, 손해보험업,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감독기관(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및 보험공사)으로부터 금융기관 건전경영 평가기준에 의거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함. 다만, 금융전업기관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계열 전체 또는 계열에 속하는 모든 개별법인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지도비율(또는 업종별 지도비율)이상이어야 함

### ③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당해기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별표2에 의하되 당해기업이 신설되는 생명보험회사에 출자하려는 금액을 차감한다)이 은행감독원장이 설정한 업종별 지도비율이상인 기업에 한함. 다만,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 전체 또는 계열에 속하는 모든 개별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설정한 지도비율(또는 업종별 지도비율)이상이어야 함
- 위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 경우에도 주주자격 중 출자자격이 제한되는 개인이 당해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인 기업은 주주자격이 없음. 다만, 개인이 계열주인 기업으로서 그 계열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와 그 계열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총수가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자본금과 예탁금

### ①납입자본금

- 설립지역에 관계없이 100억원 이상
- 자본금은 모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

### ②자본금의 일부예탁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해야 함

#### 다. 설립허가시의 우선순위

- ① 허가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의 “가” 내지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의 보험회사를 허가함
- ② 기업의 상호출자 등에 의한 경제력집중방지를 위하여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를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보다 우선하여 허가함
- ③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업의 전업화 유도 및 금융업 참여의 기회 균등화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최우선하여 허가함
  - 중소기업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당해 계열에 속하는 비금융기업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업에 전업화 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 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금융업에 전업화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보험회사업허가 이후 계속하여 금융업에 전업하는 조건이어야 함)
- ④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지역포함)을 제외한 지방에 본점을 두는 회사를 우선하여 허가함
- ⑤ 기타 주주의 출자능력 및 건전성과 기업의 집중도등을 고려하여 허가함

#### 라. 허가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및 허가절차

- ① 허가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수의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내허가 함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이 기준에 의한 “주주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 및 해당자금 출처의 정당성 여부
  - 당해회사의 사업계획이 보험산업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 여부

- ②내허가를 받은 자는 내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자본금 납입 등 영업 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 한 후 본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③본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실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업을 허가 함

### 마. 허가신청시의 유의사항

- ①금융업에 전업화 하려는 개인 및 금융기관의 출자자는 향후 2년내에 현재 영위중인 비금융 업종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금융전업화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주거래은행장 및 은행감독원장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함
- ②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주 또는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당해기업 또는 계열전체이거나 계열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자기비율 지도비율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허가신청해야 함,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또는 보험공사 사장으로부터 건전경영 평가기준에 의한 건전경영 평가를 받아 허가신청해야 함
- ③이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가 주주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금융전업화 추진계획등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이전등의 제재조치를 함

### 바. 세부 허가 기준

- ①'88. 5월 정부가 발표한 허가우선순위 지침을 토대로 하고, 보험심



의위원회 및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의 토의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허가대상자 선정 방법을 마련하였음

②적정 허가회사 수

- 5~8개사의 허가가 거론되었으나, 합작생명보험회사 수준인 5~6개사가 위원회의 다수의견
- 이에 따라 내허가된 합작생명보험회사 수 수준인 6개사를 허가하기로 함. (한국, 신한, 동일, 대신, 한덕, 태평양)

③허가업체 선정 방법

- 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신청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 허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종합평가 점수를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었음
- 이에 따라 허가 대상자 선정의 명료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부여에 의한 종합평가점수로 허가 대상자를 선정함

④평가항목과 가중치

항 목	가 중 치
금 융 전 업	20%
개 인 출 자	16%
지 방 본 사	16%
출 자 능 력	16%
경 영 능 력	16%
출자의 건전성	16%
6개 항목	100%

⑤각 항목별 점수배정방법

-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자를 3등급(상, 중, 하)으로 구분하고, 점수 배정은 3 : 2 : 1로 함
- 다만, 3등급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지방본사와 개인출자의 경우는 2등급(상,중)으로 구분하고 점수는 3 : 2로 배정함

## ⑥내허가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점수 순위별로 우선순위1~6위 회사를 내허가함
- 내허가 받은 자가 당부가 '85. 5월에 발표한 허가기준상의 주주의 자격기준에 결격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내허가 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주주자격 결격자
  - 15대 재벌의 계열주(16~30대 재벌은 50%미만 만출자 허용)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최근 3년동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자
  - 위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자(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서 규정)에 있는 자

## ⑦금융전업 항목 평가기준

-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보험회사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갖춘 우수한 금융기업집단이므로 신설 보험회사는 이들 외국보험회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내국보험회사 신설 허가를 할 때에 금융업경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신청자를 평가시 우대하는 것이 국내보험시장 발전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임
- 허가신청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그 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열법인을 포함함. 이하 "대주주"라 함)가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상등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을 경영하는 경우
  - 중등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 하등급: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 다만,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을 경영하는 경우에 포함함.

-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을 처분하고 금융업에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설립 허가기준에서 요구하는 금융전업화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일체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 ⑧개인출자 항목 평가기준

- 개인이 출자하는 것을 법인이 출자하는 것보다 평가시 우대하는 것은 기업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과 부실화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개인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설립에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

#### ⑨지방본사 항목 평가기준

- 지방 본사소재를 평가시 우대하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금융자산의 지역간 균형배분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신청회사의 본사가 서울인지, 지방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⑩출자능력 항목 평가기준

- 보험회사가 설립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상당규모의 자본증액이 요구되므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안정과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이 필수적임
- 따라서 출자주주의 자본조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출자주주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재산세(과거의 부의 축적정도) 및 소득세(현재의 소득수준) 납세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였

음

- 허가신청회사간의 출자능력 비교는 51%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주주(주주 1인이 51%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1%를 출자한 상위지분의 주주집단)의 최근 1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납세실적을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법규상 규정된 타법인에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 하려는 “한양생명”과 지방생명보험회사로 허가 할 계획인 “충북생명”을 제외한 15개사를 기준으로 함)
- 상등급: 1~5위
- 중등급: 6~10위
- 하등급: 11~15위

#### ⑪ 경영능력 항목 평가기준

- 보험회사가 설립 후 효율적인 경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신설 보험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대주주들의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금융업 종사경력을 평가기준으로 함
-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등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상등급: 대주주(1인인 경우 당해인, 다수인 경우 과반수이상)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중등급: 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하등급: 대주주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 ⑫ 출자 건전성 항목 평가기준

- 보험회사가 설립 후에 건전하게 경영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당해 보험회사에 출자할 대주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종 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시장기반과 건실한 경영내

- 용 및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경영 내용이 동종업계 내에서 우수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 상등급: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모두 동업종 평균이상이고 배당을 한 경우
    - 중등급: 상기 3지표 중 2개가 충족되는 경우
    - 하등급: 상기 3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비금융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주력기업(매출액기준)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내에서 양호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 상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경우
    - 중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 이하인 경우
    - 하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출자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는 하등급으로 분류함

#### 4.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설립 허가기준

##### 가. 주주의 자격

- ① 신설될 지방생명보험회사의 내국인 주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재무부장관이 사회통념상 당해 계열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및 그 계열주가 아닌 자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와 그 계열법인이 아닌 자. 다만,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전업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최근 3년 동안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부실기업정리 대상법인(산업합리화대상) 및 그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 위의 계열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나. 자본금과 예탁금

##### ①납입자본금

-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
- 자본금 납입은 모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

##### ②자본금중 일부 예탁

- 납입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하여 국내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함

#### 다. 설립지역(본점 소재지) 및 발기인 대표

##### ①본점소재지: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 ②발기인대표: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지역 상공회의소회장

#### 라.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재산운용

- ①지방생명보험회사의 재산운용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 중심으로 운용해야 함

#### 마. 허가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 ①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국내보험시

장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이 기준에 의한 “주주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이 보험산업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보험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부록 3 : 보험회사 시장 퇴출에 관련된 법규

### 1. 보험업법상 관련 조항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위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보험업법시행령상 관련 조항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②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③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평가의 실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보험업감독규정상 관련 조항

-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 제2절 재무건전성 평가

**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평가등급의 설정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5조(위험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험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분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 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

- 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 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2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감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업의 전부정지
2. 보험업 허가의 취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6.15.>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관련 조항

**제5-4조(자산·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5-5조(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7-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검사 등을 통하여 별표 10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과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경영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는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⑤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2와 같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10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계량평가항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제5-6조관련)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 I (20점)</li> <li>• 지급여력 비율 II (1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li> <li>•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li> <li>•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li> <li>•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자산건전성 (20점)	자산건전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자산비율</li> <li>• 위험가중자산비율</li> <li>• 대손충당금적립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li> <li>•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li> <li>• 부실자산 관리능력</li> <li>• 여신관리의 적정성</li> <li>•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li> <li>•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경영관리 (15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li> <li>•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li> <li>•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회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li> <li>•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li> <li>• 재보험업무의 적정성</li> <li>•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수익성 (20점)	수익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li> <li>•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li> <li>•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li> <li>•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li> <li>•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li> <li>•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비율</li> <li>• 수지차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li> <li>• 유동성 관리능력</li> <li>•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주 1 :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 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2 : 계량평가항목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 종합평가등급별 정의

평가 등급	정 의
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 경영이 이루어짐</li> <li>○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li> <li>○ 외부의 금융·경제적 불안요인 및 비정상적인 영업여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li> <li>-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li> </ul>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본적으로 경영이 건전하나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li> <li>○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li> <li>○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li> <li>-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li> </ul>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li> <li>○ 불리한 영업여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취약점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li> <li>○ 법규정 위반사례가 많음</li> <li>○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li> <li>○ 위험관리수준이 다소 취약함</li> <li>- 취약점 시정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li> </ul>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취약점들이 여러부분에 걸쳐 많이 나타남</li> <li>○ 시정되기 어려운 주요 문제점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장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li> <li>○ 다만,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li> <li>○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함</li> <li>-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됨</li> </ul>
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4등급보다 더욱 악화)</li> <li>○ 경영부실 정도와 규모가 매우 심각하여 주주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함</li> <li>○ 위험관리수준이 매우 취약함</li> <li>-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이전, 청산, 인수·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li> </ul>

⑧ 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0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 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 3. 최직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위험평가)** ①감독규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사항을 별표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②위험평가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험평가 평가부문 및 종합등급 산정(제5-7조제1항관련)

1. 위험평가 평가부문

평가부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 및 기능
2. 통합위험관리 체제
3. 보험위험 관리
4. 금리위험 관리
5. 시장위험 관리
6. 신용위험 관리
7. 유동성위험 관리
8. 비재무위험 관리

## 2. 위험평가 종합등급 산정절차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b>[부문별 평가등급 산정]</b> ◇ 회사의 각 부문별 위험관리 현황을 감안하여 부문별 평가등급 산정
2단계	<b>[위험평가 종합등급 잠정치 산정]</b> ◇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하여 잠정 종합평가등급 산정 ※ 회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특성상 특정 평가부문의 중요성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부문별 가중치 부여 가능
3단계	<b>[위험평가 종합등급 확정]</b> ◇ 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 현황 및 임직원과의 면담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 평가등급 확정

## 3. 위험평가 종합등급별 정의

구분	내용
1등급 (우수)	◇ 평가사항의 대부분이 우수하고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등급 (양호)	◇ 평가사항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보통)	◇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평가사항 중 여러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등급 (취약)	◇ 평가사항의 일부가 상당히 취약하고 전체적인 위험 관리 상태가 부진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높음
5등급 (위험)	◇ 평가사항 대부분이 취약하고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매우 부진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항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경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록 4 : 분석에 사용된 퇴출 손해보험회사 리스트

<자발적 퇴출 미국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20265	2004	24939	12661	2002	8079
24660	2004	9815	12084	2002	6814
36374	2003	68778	25208	2002	5734
12220	2003	57094	24945	2002	5568
23930	2003	48636	33642	2002	811
31089	2003	41784	11576	2001	87394
33812	2003	39634	42250	2001	78782
29572	2003	24620	33529	2001	77758
33219	2003	24073	21350	2001	48383
43001	2003	13256	42633	2001	45422
14931	2003	10881	26891	2001	34816
21040	2003	10226	21130	2001	32684
40070	2003	9542	43702	2001	23935
10168	2003	6208	22937	2001	22333
10169	2003	5948	28045	2001	22082
28614	2003	3355	10823	2001	20955
13714	2002	98233	20656	2001	17630
12726	2002	94081	10928	2001	17162
24953	2002	51531	21431	2001	17012
21245	2002	45597	39330	2001	14781
37958	2002	26661	24643	2001	14018
28100	2002	22383	10871	2001	13945
30821	2002	21563	34983	2001	10620
10221	2002	20271	15695	2001	5551
16403	2002	19305	37419	2001	4381
21237	2002	16646	15075	2000	32951
24937	2002	15772	10711	2000	14789
34282	2002	13612	10297	2000	7458
32115	2002	10835	43443	2000	7160
22489	2002	10438			

2004년: 2개

2003년: 14개

2002년: 19개

2001년: 20개

2000년: 4개

Total = 59개

&lt;M&amp;A 퇴출 미국 손해보험회사&gt;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11001	2004	26172	40273	2001	94514
23973	2004	17944	20311	2001	86959
25488	2004	5693	40991	2001	70571
11000	2003	94943	30031	2001	70535
31348	2003	31009	34231	2001	45572
11545	2003	25443	36471	2001	33858
21113	2003	20062	18468	2001	16785
19007	2003	10058	25100	2001	7893
18333	2002	10262	25439	2000	15756
10748	2002	2321	10325	2000	1360
2004년: 3개					
2003년: 5개					
2002년: 2개					
2001년: 8개					
2000년: 2개		Total = 20개			

<비자발적 퇴출 미국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11085	2004	2056	39462	2001	32506
11218	2003	54539	21725	2001	8919
10678	2003	23951	30205	2001	5339
28720	2003	17461	11035	2001	2612
10668	2003	15526	20150	2001	2307
10249	2003	11764	32360	2001	1651
11012	2003	7045	16276	2001	1099
11013	2003	7037	34975	2001	729
36360	2003	5446	10056	2000	13304
10892	2003	5135	25267	2000	9926
18643	2003	3062	10866	2000	6024
34584	2003	2673	10869	2000	6021
11031	2003	1346	33766	2000	5579
16292	2003	747	46515	2000	5328
10026	2003	667	44296	2000	3059
44890	2002	13892			
40495	2002	1790			
34266	2001	46911			
29092	2001	40131			
28258	2001	37475			

2004년: 1개

2003년: 14개

2002년: 2개

2001년: 11개

2000년: 7개

Total = 35개

##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 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회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회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 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계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회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회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회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증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 I )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업창회, 2000.3

2000-2 보험회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업창회,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중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

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1호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회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키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지기 (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해보험회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회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 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 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2006-1	생명보험회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명보험회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 저자약력

### 김현수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보험전공)  
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조지아주립대학교 방문교수  
현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e-mail: briank@sch.ac.kr)

## 연구보고서 2006-2 보험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06년 4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우씨앤피

---

ISBN 89-5710-035-0 94320

定價 10,000